

제26-정기1차 규칙개정위원회 회의록

2026년도 정기1차 규칙개정위원회의 심의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- 회의일시 : 2026. 3. 6.(금) 13:30 ~ 15:30
- 회의장소 : 서울 스파크플러스 삼성2호점 406호
- 심의결과

1. 규칙개정안건

안건수	원안 가결	수정 가결	심의 보류	부결
7건	5건	2건	-	-

2. 일반의결안건 · 보고안건

일반의결안건					보고안건	
안건수	원안 가결	수정 가결	심의 보류	부 결	안건수	원안 접수
-	-	-	-	-	3건	3건

붙 임 :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 등

2026. 3. 6.

위원장	한 국 전 력 거 래 소	김 홍 근 (불 참)
위 원	한 국 전 력 거 래 소	옥 기 열
	기 후 에 너 지 환 경 부	김 양 지
	단 국 대 학 교	조 홍 종
	건 국 대 학 교	노 재 형
	법 무 법 인 광 장	조 영 재
	한 국 전 력 공 사	오 흥 복 (대 참)
	한 국 남 부 발 전	서 성 재
간 사	G S E P S	황 태 규
	한 국 전 력 거 래 소	안 병 진

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전력계통 부하모델 최신화를 위한 규칙개정(안)

정기1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6-정기1-1호
개최일시	2026년 3월 6일 13:30
제안자	한국전력공사, 전력거래소(계통기술팀)

전력계통 부하모델 파라미터 변경, 부하모델 최신 적용·갱신 대상 명확화 및 갱신주체 명시 등

현행	개정(안)																		
<p>[별표3] 전력계통 운영 기준 <중략> 4.0 계통검토시 안정유지기준 <중략> 4.2 부하모델 : 조류계산시는 정전력 모델을 적용하며, 정밀모의 또는 과도모의시는 정적부하모델을 적용한다. 단 특정한 값이 없는 경우 아래 대표값을 적용하고, 거래소는 주기적으로 최신값으로 갱신하여야 하며, 한전은 거래소에서 요청시 부하모델 자료를 제공한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유효전력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무효전력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정전류(%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.2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.8</td> </tr> <tr> <td>정임피던스(%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9.5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8.9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잔여부분은 정전력 부하임.</p>	구분	유효전력	무효전력	정전류(%)	19.2	30.8	정임피던스(%)	39.5	48.9	<p>[별표3] 전력계통 운영 기준 <중략> 4.0 계통검토시 안정유지기준 <중략> 4.2 부하모델 : 조류계산시는 정전력 모델을 적용하며, 정밀모의 또는 과도모의시는 정적부하모델을 적용한다. 4.2.1 정적부하모델은 아래 대표값을 적용한다. 단, 정적부하모델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정한 값이 있는 경우 대표값에 우선하여 이 값을 적용한다.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유효전력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무효전력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정전류(%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6.83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7.08</td> </tr> <tr> <td>정임피던스(%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4.95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5.8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잔여부분은 정전력 부하임.</p> <p>4.2.2 한전은 5년 주기로 정적부하모델의 대표값을 갱신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시 전력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갱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</p> </p>	구분	유효전력	무효전력	정전류(%)	56.83	17.08	정임피던스(%)	24.95	65.80
구분	유효전력	무효전력																	
정전류(%)	19.2	30.8																	
정임피던스(%)	39.5	48.9																	
구분	유효전력	무효전력																	
정전류(%)	56.83	17.08																	
정임피던스(%)	24.95	65.80																	

회의결과 : 원안가결

○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는데 동의함

※ 계통평가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방법론 등을 개선 바람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6년 3월 6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

김홍근


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신재생자료취득시스템 주·후비 체계 구축을 위한 규칙개정(안)

정기1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6-정기1-2호
개최일시	2026년 3월 6일 13:30
제안자	전력거래소(차기IT추진실)

제안내용	<p>□ 신재생자료취득장치의 통신규격 및 통신회선 규격 개정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장 신재생자료취득장치가 나주 및 중부본부 신재생자료취득 시스템과 데이터 통신하도록 변경 등 <p>□ 제안자의 수정 개정(안) 요청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설치 대상 변경 - (원 개정(안)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bottom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연번</th> <th style="width: 70%;">상황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대상여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>전력거래시스템 공지일 이전 도입된 신재생자료취득장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X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</td> <td>전력거래시스템 공지일 이전에 도입됐으나,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시장에서 안정적 시장 운영을 위해 통신 이중화를 요구하는 경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O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</td> <td>전력거래시스템 공지일 이후 도입되는 신재생자료취득장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O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수정 개정(안)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bottom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연번</th> <th style="width: 70%;">상황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대상여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>전력거래시스템 공지일 이전 도입된 신재생자료취득장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O*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</td> <td>전력거래시스템 공지일 이후 도입되는 신재생자료취득장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O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공지일 이전에 도입된 신재생자료취득장치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나주·오송 양방향 송/수신 기능 탑재(관련 소요 예산은 전력거래소에서 확보 완료('26.2.25.))</p>	연번	상황	대상여부	1	전력거래시스템 공지일 이전 도입된 신재생자료취득장치	X	2	전력거래시스템 공지일 이전에 도입됐으나,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시장에서 안정적 시장 운영을 위해 통신 이중화를 요구하는 경우	O	3	전력거래시스템 공지일 이후 도입되는 신재생자료취득장치	O	연번	상황	대상여부	1	전력거래시스템 공지일 이전 도입된 신재생자료취득장치	O*	2	전력거래시스템 공지일 이후 도입되는 신재생자료취득장치	O
연번	상황	대상여부																				
1	전력거래시스템 공지일 이전 도입된 신재생자료취득장치	X																				
2	전력거래시스템 공지일 이전에 도입됐으나,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시장에서 안정적 시장 운영을 위해 통신 이중화를 요구하는 경우	O																				
3	전력거래시스템 공지일 이후 도입되는 신재생자료취득장치	O																				
연번	상황	대상여부																				
1	전력거래시스템 공지일 이전 도입된 신재생자료취득장치	O*																				
2	전력거래시스템 공지일 이후 도입되는 신재생자료취득장치	O																				



□ 회의결과 : 수정가결

- 참석위원 전원이 제안자의 수정 개정(안)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(안)으로 가결함

주요
토의내용

개 정 (안)	수 정 (안)
<p>[별표13] 계통운영시스템 운영 절차 [붙임 8.1] 계통운영시스템의 자료취득 기준 8.3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의 통신 규격 <중략> 8.3.5.3 발전사업자 및 급전가능재생에너지 자원, 준중압급전자원을 보유한 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가이드를 참고하여 발전기와 신재생자료취득장치 간 데이터연계 기능을 개발하고, 완료 후 전력거래소와 통신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. <u>이 경우 중앙전력관제센터 및 후비 전력관제센터와 데이터를 송수신하여야 한다. 단, 후비전력관제센터와 데이터를 연계하는 경우는 전력거래시스템에서 공지하는 날 이후 도입하는 신재생자료취득장치 및 신재생자료취득장치를 도입한 회원사가 참여하는 시장의 요구사항에 명시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.</u></p>	<p>[별표13] 계통운영시스템 운영 절차 [붙임 8.1] 계통운영시스템의 자료취득 기준 8.3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의 통신 규격 <중략> 8.3.5.3 발전사업자 및 급전가능재생에너지 자원, 준중압급전자원을 보유한 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가이드를 참고하여 발전기와 신재생자료취득장치 간 데이터연계 기능을 개발하고, 완료 후 전력거래소와 통신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. <u>이 경우 중앙전력관제센터 및 후비 전력관제센터와 데이터를 송수신하여야 한다.</u></p>
<p>부 칙(2026. 00. 00) 제1조(시행일) ①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. ② <u>[별표13] 8.3.5.3의 개정규정은 전력거래소 차기전력계통운영시스템 준공을 고려하여 규칙개정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력거래시스템에서 공지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p>부 칙(2026. 00. 00) 제1조(시행일) ①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. ② <u>[별표13] 8.3.5.3의 개정규정은 전력거래소 차기전력계통운영시스템 준공을 고려하여 규칙개정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력거래시스템에서 공지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</u> 제2조(신재생자료취득장치 주·후비 체계 구축에 대한 경과조치) <u>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설치완료된 장치의 경우, [별표13] 8.3.5.3조의 적용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.</u></p>

심의 결과 : 수정가결

2026년 3월 6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

김 홍 근

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전력거래시스템 운영 절차 현행화를 위한 규칙개정(안)

정기1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6-정기1-3호
개최일시	2026년 3월 6일 13:30
제안자	전력거래소(차기IT추진실)
제안내용	<p><input type="checkbox"/> (운영절차 현행화) 발전기 등록, 입찰, 계량, 정산, 정보공개 등 전력시장운영 업무 절차에 맞춰 시장운영시스템 운영 절차 현행화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(명칭통일) 전력시장운영규칙 본문 및 별표·별지 등에 명시된 시스템 명칭에서 'e-Power Market' 문구 삭제하고 전력거래시스템으로 변경</p>
주요 토의내용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회의결과 : 원안가결</p> <p>○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는데 동의함</p>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6년 3월 6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

김 홍 근

(직인) 

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단순·경미한 사항에 대한 전력시장운영규칙 일괄개정(안)

정기1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6-정기1-4호
개최일시	2026년 3월 6일 13:30
제안자	전력거래소(시장규칙팀)
제안내용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누락사항 보완, 규칙 명확화 및 산식오류·오타자 수정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 관련 개정 누락사항 보완 ○ 공급의무자의 월간정산 자료 제출일자 기준 명확화(개정 누락 보완) ○ 계통운영시스템 자료취득 기준의 취득주기 명확화 ○ 정산 산식 내 오류(오기입) 정정 ○ 단순 오타자 수정 등
주요 토의내용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회의결과 : 원안가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는데 동의함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6년 3월 6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

김 홍 근

(직인)

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수요자원 거래 제도 간소화 및 시험절차 완화를 위한 규칙개정(안)

정기1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6-정기1-5호
개최일시	2026년 3월 6일 13:30
제안자	전력거래소(수요자원시장팀)
제안내용	<p><input type="checkbox"/> (자발적 입·낙찰제도 변경)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거래시간별 수요반응자원 감축계획량 입·낙찰 조건 삭제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(시험절차 정비) 기존 감축시험과 감축신뢰성시험 이원 운영 → 개선 감축시험으로 통합 및 운영기준 변경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(기타 개정) 수요관리사업자 의무조항, 주파수연계 시험조건 및 감축량 산정 기준, 수요반응자원 휴무일 예외조항 등</p>
주요 토의내용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회의결과 : 원안가결</p> <p>○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는데 동의함</p>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6년 3월 6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

김 홍 근


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기동비용 정산금(SUAP) 지급기준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(안)

정기1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6-정기1-6호				
개최일시	2026년 3월 6일 13:30				
제안자	씨지앤을촌전력				
제안내용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기동비용 정산금(SUAP) 산식 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력계통 사유로 하루전발전계획량(DAOS)이 발표되고 발전가격(GP)이 계통한계가격(SMP)을 초과하면서, 해당 거래일의 연속운전구간의 모든 시간대에서 GP가 SMP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계획 기동횟수 산정에서 제외 ○ 시스템 보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규칙 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시행토록 부칙 신설 등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현행</th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개정(안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 [별표2] 정산기준 1. 발전사업자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에 대한 정산 4. 기동비용조정에 대한 정산 기동비용 조정(SUAP)은 다음 공식에 따라 정해진다. $SUAP_i = \text{Max}\{SUC_i \times (NSUA_i - NSUS_i), 0\}$ (중략) 단, 발전사업자의 사유로 기동한 경우에는 $SUS_{i,t} = 1$ <신설> 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 [별표2] 정산기준 1. 발전사업자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에 대한 정산 4. 기동비용조정에 대한 정산 기동비용 조정(SUAP)은 다음 공식에 따라 정해진다. $SUAP_i = \text{Max}\{SUC_i \times (NSUA_i - NSUS_i), 0\}$ (중략) 단, 발전사업자의 사유로 기동한 경우에는 $SUS_{i,t} = 1$ 단, 계통제약 사유로 $DAOS_{i,t} > 0$ 이고 $GP_{i,t} > SMP_t$이면서, 거래일의 연속운전시간 중 모든 시간대에서 $GP_{i,t} > SMP_t$이면 $SUS_{i,t} = 0$으로 하며, 발전사업자의 사유로 기동한 경우에는 $SUS_{i,t} = 1$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현행	개정(안)	[별표2] 정산기준 1. 발전사업자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에 대한 정산 4. 기동비용조정에 대한 정산 기동비용 조정(SUAP)은 다음 공식에 따라 정해진다. $SUAP_i = \text{Max}\{SUC_i \times (NSUA_i - NSUS_i), 0\}$ (중략) 단, 발전사업자의 사유로 기동한 경우에는 $SUS_{i,t} = 1$ <신설>	[별표2] 정산기준 1. 발전사업자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에 대한 정산 4. 기동비용조정에 대한 정산 기동비용 조정(SUAP)은 다음 공식에 따라 정해진다. $SUAP_i = \text{Max}\{SUC_i \times (NSUA_i - NSUS_i), 0\}$ (중략) 단, 발전사업자의 사유로 기동한 경우에는 $SUS_{i,t} = 1$ 단, 계통제약 사유로 $DAOS_{i,t} > 0$ 이고 $GP_{i,t} > SMP_t$ 이면서, 거래일의 연속운전시간 중 모든 시간대에서 $GP_{i,t} > SMP_t$ 이면 $SUS_{i,t} = 0$ 으로 하며, 발전사업자의 사유로 기동한 경우에는 $SUS_{i,t} = 1$
현행	개정(안)				
[별표2] 정산기준 1. 발전사업자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에 대한 정산 4. 기동비용조정에 대한 정산 기동비용 조정(SUAP)은 다음 공식에 따라 정해진다. $SUAP_i = \text{Max}\{SUC_i \times (NSUA_i - NSUS_i), 0\}$ (중략) 단, 발전사업자의 사유로 기동한 경우에는 $SUS_{i,t} = 1$ <신설>	[별표2] 정산기준 1. 발전사업자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에 대한 정산 4. 기동비용조정에 대한 정산 기동비용 조정(SUAP)은 다음 공식에 따라 정해진다. $SUAP_i = \text{Max}\{SUC_i \times (NSUA_i - NSUS_i), 0\}$ (중략) 단, 발전사업자의 사유로 기동한 경우에는 $SUS_{i,t} = 1$ 단, 계통제약 사유로 $DAOS_{i,t} > 0$ 이고 $GP_{i,t} > SMP_t$ 이면서, 거래일의 연속운전시간 중 모든 시간대에서 $GP_{i,t} > SMP_t$ 이면 $SUS_{i,t} = 0$ 으로 하며, 발전사업자의 사유로 기동한 경우에는 $SUS_{i,t} = 1$				
주요 토의내용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회의결과 : 원안가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는데 동의함 				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6년 3월 6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

김 홍 근

代
의
원
(직인)

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직접전력거래 부대비용 완화 및 제도 보안을 위한 규칙개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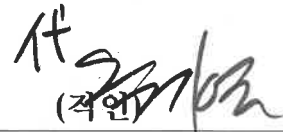
정기1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6-정기1-7호
개최일시	2026년 3월 6일 13:30
제안자	전력거래소(전력신사업팀)
제안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직접전력거래 참여기업의 부대비용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재정보증 수단 확대) 직접전력거래 사업자가 현금 외 보증보험 등 비현금 방식으로 재정보증 가능하도록 허용 ○ (부가정산금 산정 합리화) 직접전력거래 부가정산금 단가 산정에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하고, 비용평가위원회 심의·의결을 통해 확정 <input type="checkbox"/>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관련 기준 등의 구체적 명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시장거래 정산기준 완비) 직접전력거래 전기저장장치의 전력시장과 연계된 초과방전량 및 충전전력량 세부 산식 마련 ○ (부대비용 산정기준 완비)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재정보증금 및 부가정산금 세부 산정내용 마련 ○ (기타 보완사항) 전력시장운영규칙 내 직접전력거래 범위 정의 및 전력거래수수료 부과대상 명확화 등
주요 토의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회의결과 : 수정가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안건은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부가정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개정(안)에 대하여 가결함 -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부가정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은 전기저장장치의 자원 특성 및 기능, 충·방전 비용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논의 후 차기 위원회 등에 상정

심의 결과 : 수정가결

2026년 3월 6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

김 홍 근


 (직인)



【붙임 2】

일반의결·보고사항 결과

보고 내용	보고 결과
▪ (제1호) 규칙개정위원회 위원 위촉 결과	원안 접수
▪ (제2호) 제25-정기3차·긴급6차·긴급7차 및 제26-긴급1차 규칙개정위원회 결과	원안 접수
▪ (제3호) 비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협의 현황	원안 접수*
* 추가적인 검토 및 논의 후 2026년 2분기에 보고해 주기 바람	